

「팹리스 챌린지 대회」 참가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의 'BIG3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 일환으로, 시스템반도체 분야 설계전문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팹리스 챌린지 대회」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추진개요

사업목적

- 시스템반도체 분야 설계전문기업 (팹리스)에 MPW 제작을 지원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한 생산애로 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지원대상

-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스템반도체 MPW 공정 이용을 원하는 설계전문기업으로, 중소기업부의 'BIG3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참여기업 또는 창업기업*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업력 7년 이내 기업

지원규모 : 5개사 이내

신청과제 : 자유주제 (1개 기업당 1개의 과제만 제출)

2. 지원내용

- ◆ ① 삼성전자 파운드리 MPW 제작 공정 제공, ② MPW 제작비용, ③ 사업화를 위한 후속 지원 프로그램 신청시 우선 선발

① MPW 제작 공정

- 선정된 기업에게 삼성전자 파운드리 MPW 셔틀 공정에 따라 MPW 제작 기회 우선 제공

< 공정별 MPW 제공 시기 >

연번	공정	2022년					2023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5LPE	-	-	●	-	-	-	●	-	-	-	●	-
2	8LPP	-	-	●	-	-	-	-	-	●	-	-	-
3	14LPP	-	-	●	-	-	-	-	-	-	-	●	-
4	LN28LPP	-	-	●	-	-	-	-	-	●	-	-	-
5	LN28FDS	-	-	●	-	-	-	-	●	-	-	-	●
6	LN28LPP	-	-	-	-	-	-	-	-	-	●	-	-
7	LF6/LF6S	●	-	-	-	●	-	-	-	●	-	-	-
8	LFR6LP/LR9ULP	-	-	-	-	-	●	-	-	-	-	-	●
9	CS9BLPFC	-	-	-	-	-	-	-	-	-	-	-	●
10	APM1345	-	-	-	-	-	●	-	-	-	-	-	-
11	BCD1340HP	-	-	-	-	●	-	-	-	-	-	●	-
12	BCD1370	-	●	-	-	-	-	-	-	●	-	-	-

* 공정별 제공 시기(표 안 원형 표시)는 변동 가능

② MPW 제작 비용

- 기업당 1억원 이내로 소요비용 지원(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업 부담 필요)
- * 지원범위 : MPW 공정비용 및 IP 활용비, 디자인서비스 이용료(지원항목은 기업이 선택)

③ 후속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참여기업 선정 시, 본 대회 선정기업을 우선 선발하여 지원
-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3년간 최대 6억원, (연계지원) 기술개발(기술혁신·창업성장), 정책자금, 기술보증, 수출바우처 등 / 단,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할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추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3. 추진절차

- 신청기간 : 2022. 6. 29 (수) ~ 2022. 7. 13(수) 까지
 - 신청기간 내 제출서류 업로드 및 '제출하기'를 완료하여, 접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 완료
 -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사업 신청 권장 (신청기간 내에는 신청서 제출 후라도 수정 가능)
- 서류평가 : ~2022. 7. 20(수) / 서류평가 결과는 개별 안내
 - 평가위원회가 최종 지원규모의 3배수(15개사) 이내 선정 예정
- 발표평가 : 2022. 7. 25(월) / 장소, 시간 등은 별도 안내
- 평가항목
 - 제품의 기술성 (성능, 완성도, 발전 가능성 등)
 - 제품의 사업성 (시급성, 시장성, 사업화 계획 등)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6. 29 (수) 09:00 ~ 2022. 7. 13(수) 16:00 까지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 '팝리스챌린지 모집공고' → '사업신청 바로가기'

① K-Startup 누리집 접속 → ② '사업공고' 클릭 → ③ '팝리스 챌린지 공고' 클릭 → ④ 공고문 내 '사업신청 바로가기' 클릭 → ⑤ 참가신청서 작성 → ⑥ 제출서류 등록(업로드) → ⑦ '제출하기' 클릭

※ 신청 전 회원가입 필요(반드시 기업 대표자가 신청)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부수	제출자
1	참가신청서 (K-Startup 누리집 참조)	1부	신청기업
2	사업자등록증	1부	신청기업
3	인증 및 기타서류	각 1부	필요시

※ 인증 및 기타서류는 신청기업이 기술력 보유, 향후 사업 추진계획 입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할 경우 제출하며, 의무사항 아님

5. 기타사항

-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BIG3 기업 외 일반 창업기업으로 지원하는 경우, 2015년 6월 29일 이후 창업한 기업에 한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업력 7년 이내' 여야 하며, 창업 여부 기준은 '[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확인
 - 1) 창업여부 및 창업개시일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 적용
 - 2)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3)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 기준 (통계청, kssc.kostat.go.kr 참조)
 - (서류평가) 산·학·연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항목 (3. 추진절차 참조) 기준에 따라 발표평가 대상 기업 선정(15개사 이내)
 - (발표평가) 신청기업이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성·시장성 등을 발표(프레젠테이션)하고,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최종 지원기업 선정
 - 기업별 15분간 진행 : PT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신청기업 대표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자를 대리하는 자가 발표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평가점수가 같을 경우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용 실적이 없는 기업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음
 - (기타참고)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사업계획을 모방·표절,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연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선정된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신청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후속 연계 지원 불가(신청 제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 ①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자,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④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최종 선정기업에 대한 시상식은 별도 개최 예정 (22.7월말)이며, 기업 대표자 참석 필요

6. 문의처

- 대회운영 문의 :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산업진흥센터 (02-880-8741~2)
- 온라인 신청(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붙임 : 창업여부 판단 기준표 1부.

창업여부 판단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